



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2.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)</li> <li>3. 사업자등록증 원본(「소득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4. 사업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(「소득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·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/ol>	<p>수수료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개인: 사업자등록증명</li> <li>2. 법인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4. 건축물대장</li> <li>5. 주민등록표 초본.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같음합니다.</li> </ol>	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(사본을 포함한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처리절차**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